201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종량세 가능성 연구-

- 2019. 0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김진섭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종량세 가능성 연구-

- 2019. 08. -

연 구 책 임 자　김 진 섭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 구 조 원　심 원 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비즈니스경영학과 교수)
이 화 령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윤 한 국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08.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섭

<요 약>

❑ (목적) 본 연구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앞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과세제도와 주세 행정제도를 비교하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주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종량세 분석

○ (탁주) 2017년 과세표준을 816원/ℓ과 비교하면, 종량세 전환 시 종량세와 종가세의 세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 820원/ℓ로 4원 차이가 나 탁주 업계에 영향은 크지 않아 종량세로 개편 후에도 가격 인상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안정적인 주세 전환이 예상

○ (맥주) 맥주의 출고 가격이 1,153원/ℓ 일 때 맥주의 주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은 2,232원/ℓ이 되며, 종가세와 종량세의 주세 830원, 교육세 249원으로 같아짐. 출고 가격이 1,153원/ℓ을 넘어설 경우, 종가세 적용 방법보다 종량세 적용 방법이 주세 부담이 낮아짐

-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1,061원/ℓ이므로, 종가세 하에서는 주세 부과 후 2,054원/ℓ, 종량세 하에서는 2,140원/ℓ로 다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물가지수 연동

○ (탁주)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52%를 2017년도 주세 현황에 반영한 결과 각각 41.1원/ℓ, 41.4원/ℓ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재부가 산출한 41.7원/ℓ과 0.5원, 0.3원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 (맥주) 맥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6.21%, 2018년 0.04%, 2019년 6월 현재 1.72%임. 2017년도 기준으로 종량세를 계산하면 840원임

-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한 맥주 종량세는 830.3원/ℓ로 2017년과 2018년도 출고량을 이용하여 조정.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하락
-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수입 비중과 출고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세율의 연도별 편차 발생을 요인으로 언급
- 2017년 맥주의 물가상승률은 6.21%로 840원을 연동하여야하나, 기획재정부의 종량세 830.3원/ℓ 설정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주세를 설정한 것으로 분석

❑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분석

○ (탁주) 탁주의 세율은 개정 전 종가세 하에서 5%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개정 세율은 41.7원/ℓ로 시행될 예정

- 종량세 시행 시 탁주에서 발생하는 주세는 6억원 가량 감소할 것임. 이에 대하여 다음 물가 연동 시 세수확보를 위하여 대안이 필요
- 탁주는 제품 간 특성상 수입 주류와의 경쟁에서 자유로우며, 다른 주류에 비해 시장 질서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품목이므로 과세 체계 개편으로 가격 인상 없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데 적합

○ (맥주) 맥주의 개정 세율은 830.3원/ℓ('17, 18년 세율 평균)으로 발표되었으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20% 경감한 664.2원/ℓ으로 발표함

- 종량세의 방식으로 과세를 할 경우 수입원가가 높아져도 리터 당 세금은 동일하게 되므로 해외 맥주 공급자에게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유인이 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수입 맥주만을 유통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중소업체가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국내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될 것이란 우려도 상존

❑ 종량세 개편 시 정책 방향 제안

○ 1차 전환의 대상 품목은 맥주와 탁주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그 이후 방안을 제시

- 탁주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맥주의 경우 용기에 따라 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짐
- 캔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세 부담이 상승하여 정부는 2년간 한시적인 세율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안이 필요

○ 2차 전환 대상은 발효주(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 주정이 대상이 되어야 함

- (약주) 약주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적용을 비교한 결과 2017년 과세표준은 4,576원으로, 종량세 적용 시 세부담 교차 지점이 4,310원으로 4,310원 초과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
- (과실주) 과실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실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과실주의 물가지수 연동 결과 물가지수 하락(-2.35%)을 보였음. 이는 값싼 과실주의 등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세를 하향된 물가에 반영하지 않고 누적된 출고량과 주세를 바탕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기타주류) 기타주류는 첨가물 여부에 따라 기존의 맥주나 탁주에서 기타주류로 분류되기도 함. 기타주류 속 주종을 재분류하여 발포주의 경우 맥주 세율을 반영, 과일 막걸리는 탁주의 세율을 반영하는 등으로 기타주류 분류를 세분화하여 개편하여야 함
- (발효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기타주류, 주정은 종량세로 과세되며 증류주류는 종가세로 과세하는 혼합 형태가 될 것

○ 3차 전환 대상은 증류주 종량세 개편으로 WTO 내국민대우원칙을 고려하여 개편하여야 함

- 종량세 적용 시 증류주 주종 간 가격 차이가 좁혀져 우리나라의 소주 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며, 세 부담의 역진성을 고려하여야 함. 현실적인 제안은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안

- 그러나 주요국과의 정합성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종량세를 도입은 필요하므로, 한시적 세율경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의 시간을 주는 방향을 제안

❑ 주류조세 행정기관의 필요성

○ 해외 주요국들의 주류 행정을 살펴본 결과, EU 내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이 주류 행정을 따로 분담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주세법과 관련된 규정, 면허관리 등이 주세 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 주세 행정은 대부분 국세청에 일임되어 있음

○ 매년 세율 조정을 물가상승에 의한 일괄적인 조정보다 주류별 실질세율 적용할 전문 인력의 필요

○ 종량세 개편이 진행될 경우 일부 주류의 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이나 인하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 신고제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여 규제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도모

❑ 국민건강을 위하여 교정 세의 취지에 부합해야 함

○ 종량세 전환은 고도수·고세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건강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내 용 목 차

Ⅰ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 3
1. 연구방법 ····· 3
2. 연구의 구성 ····· 4

Ⅱ. 주세의 개념 체계 ····· 5

제 1 절 주세의 개념 체계 ····· 5
1. 주세의 구성 ····· 5
2. 주세의 변화 ····· 10
3. 2019.5 주세개편 발표 ····· 13

제 2 절 국내 주류시장의 현황 ····· 16
1.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 ····· 16
2. 국내 주류의 출고량 현황 ····· 18
3. 국내 주류의 주종별 출고량 현황 ····· 19
4. 주류의 수출입 현황 ····· 20
5. 주류소비 현황 ····· 26

제 3 절 선행연구 ····· 29

Ⅲ.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 32

1. EU ····· 32
2. 일본 ····· 36
3. 미국 ····· 38
4. 중국 ····· 42
5. 해외사례 시사점 ····· 46

Ⅳ. 종량세 효과 분석 ····· 47

제 1 절 분석기준 ····· 47
1. 분석방법 ····· 47
2. 정부의 개편 방향 ····· 47

제 2 절 종량세 분석 ····· 52
1. 탁주 ····· 52
2. 맥주 ····· 55

제 3 절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분석 ····· 63
1. 탁주 ····· 63
2. 맥주 ····· 64

Ⅴ. 과세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 65

Ⅵ. 결론 ····· 68

참고문헌 ····· 71

표 목 차

<표 1> 주류과세 체계 ····· 5
<표 2> 현행 주종에 따른 주세 현황 ····· 6
<표 3> 주류제조면허의 종류 및 기준 ····· 7
<표 4> 주정의 원칙 ····· 8
<표 5> 주세법에 따른 주세 세율의 변천 과정 ····· 11
<표 6>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 · 단점 비교 ····· 12
<표 7>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 ····· 16
<표 8> 주류 출고량 현황 ····· 18
<표 9> 국내 주요 주류 출고량 현황 ····· 19
<표 10> 국산 · 수입 맥주 과세체계 ····· 20
<표 11> 폭음률 ····· 26
<표 12> 청소년 음주율 추이 ····· 27
<표 13> EU의 최소 주세율 ····· 32
<표 14> EU의 수입관세율 ····· 34
<표 15> EU의 수출관세율 ····· 35
<표 16> 일본의 개정 후의 주세 일람 ····· 37
<표 17> 연방 주세율 ····· 38
<표 18> 2018~2019 주세율 추가사항 ····· 39
<표 19> 미국의 수입관세율 ····· 40
<표 20> 미국의 수출관세율 ····· 41
<표 21> 중국의 주세율 ····· 42
<표 22> 중국의 수입관세율 ····· 43
<표 23> 중국의 수출관세율 ····· 44
<표 24> 홍콩의 주세율 ····· 45
<표 25> OECD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49
<표 26> 주류별 소비자물가지수 ····· 50
<표 27> 탁주의 종량세 적용 시 세율 ····· 52
<표 28> 탁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 53

<표 29> 탁주의 종량세 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54
<표 30> 맥주의 종량세 적용 ····· 55
<표 31> 맥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 55
<표 32> 국내 맥주의 용기별 비교 ····· 58
<표 33> 수입 주류의 종가세 종량세 비교 ····· 60
<표 34> 2차 종량세 전환 제안 ····· 66

그 림 목 차

<그림 1> 한 · EU FTA와 한 · 미 FTA로 인한 연도별 맥주의 과세 변화 협정 세율 … 21
<그림 2> 연도별 맥주 수출입 현황(중량 기준) …… 22
<그림 3> 연도별 맥주 수출입 현황(금액 기준) …… 22
<그림 4> 주류별 수출 현황(중량 기준) …… 24
<그림 5> 주류별 수출 현황(금액 기준) …… 24
<그림 6> 탁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 52
<그림 7> 맥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 56

수 식 목 차

<수식 1> …… 46

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에 비교하여 불리한 과세 구조로 역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산 맥주가 가격경쟁력에서 수입 맥주에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됨.

○ 2015년 이후 '4캔에 1만 원' 할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입 맥주의 판매량 급증. 이는 미국·유럽연합(EU) 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맥주를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급증하면서 2012년 3.1%에 불과하던 수입 맥주의 국내 점유율은 2017년에는 10.6%까지 확대되었으며, 2018년 맥주 수입량은 38만 7891t으로 2015년(17만 919t) 대비 126.9% 증가하였음.

❑ 가격을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과세체계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함.

○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반면, 원가에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까지 포함되는 국산 맥주의 세금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

○ 특히,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국산 맥주보다 저렴해지며,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관세가 철폐(무관세)되어 국산 맥주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짐.

○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내 맥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는 '19. 6. 5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소세 개편안'을 발표함.

❑ 주류과세체계 개소세 개편안에는 "술값 인상 없는 주세법 개정" 원칙을 내세우며 맥주, 탁주에 한하여 우선으로 종량세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소주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수입 맥주와 비교하여 불리한 과세 구조로 국내 맥주 업계가 겪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맥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세 과세제도와 주세 행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 주세법의 개정으로 파생되는 전체적인 세수 경감, 종량세 도입이 다른 주종에 미치는 영향, FTA에 따른 국제분쟁 우려,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과세제도와 주세 행정제도를 비교하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주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1) 문헌 조사

❑ 문헌 조사를 시행하여 수집한 연구들을 토대로 현행 주세 정책을 파악함.

○ 주세에 관련한 문헌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수집

○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객관성을 유지

❑ 수집 문헌 대상

○ 국내/국외 발표된 연구 및 통계자료

○ 현행 종가세 하의 주세에 대한 문제점 관련 문헌

○ 과세형평 및 조세정책 제언에 관련 문헌

○ 외부불경제 억제 필요성에 관한 문헌

○ 세율 변동과 관련된 실증분석 문헌

○ 기타 주세 관련 문헌

2) 자료수집

❑ 본 연구는 주세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음.

❑ 통계청의 국세통계를 중심으로 2006~2017년도 주류 출고량과 주류 수입, 수출량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음.

❑ 조세재정연구원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2019년 12월에 2018년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7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함.

❑ 해외의 주세 데이터는 선행연구,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음.

❑ 통계청, 관세청,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보고서 및 공시된 데이터를 통하여 주세 관련 자료수집

- ○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수집
- ○ 관세율 변화 자료수집
- ○ 주세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수집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주세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요건을 설명한 후 주세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의 문제점 제기. 아울러 주요 국가의 과세체계, 수입제도, 규제제도, 취급제도 등을 검토 후 시사점 도출.

❑ 제3장에서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

❑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국내 주류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과 결론을 다루었음

Ⅱ. 주세의 개념 체계

제 1 절 주세의 개념 체계

1. 주세의 구성

❑ 주세의 특징

○ 주세는 간접세이면서 개별소비세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물세임.

○ 주정에 대하여는 정액 세율(종량세)을 적용하고,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차등비례세율(종가세)을 적용.

○ 주류의 출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정된 비율로 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산출방식의 측면에서는 종가세의 특성이 있지만, 낮은 도수 술에 해당하는 발효주는 30%의 저세율로 과세하며 고도주인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는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종량세의 성격임.

○ 주세에 있어서 주세 보전명령과 주류 보류의 제한 등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과정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납세를 보전함.

<표 1> 주류과세 체계

구분	과세표준	주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산	출고 가격	과세표준×세율	주세액×세율	10%
수입	수입신고가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1)

1)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종류와 종류별 주세의 세율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하고 있음.

<표 2> 현행 주종에 따른 주세 현황

주 종		주세율(A)	교육세율(B)	합산세율 (C=A+B)	합산세율 (VAT포함)	'17년주세 (억원)
발효주	탁 주	5%	-	5%	15.5%	192
	약 주	30%	-	30%	43.0%	120
	청 주		주세액의 10%	33%	46.3%	289
	과 실 주					939
	맥 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6,356
증류주	증류식 소주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112
	희석식 소주					12,432
	위스키					1,275
	브랜디					51
	일반증류주					303
	리큐르					270
기타주류 (발 효 주)1		30%	주세액의 10%	33%	46.3%	394
(불휘발분 30도 이상)		10%	주세액의 10%	11%	22.1%	
(기 타)2		72%	주세액의 30%	93.6%	112.96%	
주 정3		57천원/㎘	-	57천원/㎘	62.7천원/㎘	21
합 계						32,754

2)자료: 기획재정부(2019)

2) 기획재정부 (201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1. 발효의 방법으로 만든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아닌 것
2. 발효주와 증류주의 혼합, 기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3.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 가산
※ 전통주는 기본세율 × 50% ('08.7.1 시행)
※ 수제맥주는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 부여 중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류제조면허

○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장을 세울 때와 다른 종류의 술을 생산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탁주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제조 및 공급구역을 정부가 정해놓았고, 소주는 지역 제한이 없음.

<표 3> 주류제조면허의 종류 및 기준

면허의 종류	허용주종	신청자격	원료사용	시설기준
일반면허	모든주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입원료사용 가능)	담금(발효)조 총 용량: 3kℓ이상 제성조 용량: 2kℓ이상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맥주,탁주, 약주,청주, 과실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입원료사용 가능)	탁주 약주: 1kℓ~5kℓ 과실주: 1kℓ~5kℓ 맥주: 5kℓ~75kℓ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탁주,약주,청주 , 소주,과실주, 일반증류수 등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접 생산 또는 인근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 (수입원료 사용불가)	탁주 약주:담금실 10㎡ 과실주: 26㎡

자료: (사) 한국와인생산협회

❑ 주정의 원칙

○ 현행 주세법상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하며,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통상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3)]

<표 4> 주정의 원칙

<과세표준>		
구분	주정 외의 주류(종가세)	주정(종량세)
국내 제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가격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주세액을 제외하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
수입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수입신고하는 수량 주정(종량세)

자료: 이준규·송은주 (2017) p188.를 일부 발췌함.

❑ 특례사항

○ 외상방식

-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출고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정하며, 주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용기와 포장비용을 포함함.
- 외상의 경우 통상가격보다 높을 때, 그 가격을 주류가격으로 산정함

3) 이준규·송은주 (2017)

○ 선매 방식

-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책정함.

○ 무상출고

- 해당하는 해에 같은 규격과 용량일 경우 통상가격을 주류의 가격으로 하며,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제조원가에 10%를 가산하여 주류가격으로 책정함.

○ 운송비

-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와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책정함.

○ 소규모 주류제조

-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맥주, 탁주 등 가격은 통상 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10%를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에 40% ~ 80%를 곱하여 책정함.
-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았거나, 전년도 출고 수량이 3,000㎘ 이하일 경우 당해 출고 수량 가운데 앞서 출고하는 300㎘ 이하에 대하여 통상가격에 70%를 곱하여 책정함.

2. 주세의 변화

❑ 주세율의 변천 과정

○ 1949년 주세법을 첫 재정 시 종량세였으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1968년 종가세로 전환하였음

○ 1990년에 19종으로 세율을 규정하던 것을 11종으로 단순화하여 탁주, 약주 및 위스키의 세율을 5%, 30%, 150%로 낮추었으며, 과실주와 증류식 소주의 세율을 30% 50%로 인상함

○ 2000년에 증류주도 주종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고 격차가 상당히 컸던 것을 같은 세율로 통일하고 맥주의 세율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함

- 맥주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150%에 달하던 세율을 점차 낮추어 현재 72%로 증류주의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 위스키와 브랜디는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준수하여 기존의 소주와 같은 세율인 72%로 인하됨. (한미·한EU 주세 분쟁 WTO 상소심, '99.1)
- 주세율을 주류의 도수로 나눈 비율을 산출, 위스키(통상 도수:40)가 1.8인데 비해 소주(통상 도수:18)는 4로 나타남. 또한 맥주(통상 도수:4.5)의 경우 낮은 도수 술임에도 불구하고 주세율을 주류의 도수로 나눈 비율이 16에 달하고 있음. 맥주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나 소주 등 고도주에 비해 도수 당 주세율이 여전히 과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주세법에 따른 주세 세율의 변천 과정

주류명/년도	1974	1990	1993	1995	2000	2001	2004	2008	현재
탁주	10	5							
약주	60	30							
맥주	150			130	100			72	
청주	120	70				30			
과실주	25	30							
증류식소주	35	50			72				
희석식소주	35				72				
위스키	200	150	120	100	72				
브랜디	150		120	100	72				
리큐르	-	50			72				
일반증류수	-	80			72				
분말상태주류	-	80			72				
불휘발분 30분도 이상	-	-	-	10					
발효방법으로 발효주류 이외	-	50	70	80	30				
주정	49,350 원/kl	57,000원/kl							
	94도 초과 1도당 가산 525원	95도 초과 1돕 당 가산 600원							

자료: 양성범(2012) p7.

❑ 종가세와 종량세

○ 종량세

- 종량세란 제품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 종가세

- 종가세란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 장단점을 비교 기준은 외부불경제의 교정 효과, 과세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세수에의 영향 및 국내 주류 산업의 영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음.

-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종량세 방식을 채택함.

○ OECD 34개국 중 종가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칠레, 멕시코. 3개국에 불과함.

- 종량세 전환을 통해 주요국의 세제와의 정합성을 증진하는 것은 수출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적인 세제의 개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4)]

<표 6>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 · 단점 비교

	장점	단점
종가세	① 과세형평의 실현에 기여 : 조세 부담이 제품 가격(품질)에 비례,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 ② 조세의 중립성 유지 : 제품 간의 상대가격 유지 ③ 물가상승에 따라 세수 기반 확대 ④ 과세표준 방식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가능 ⑤ 우리나라의 소비세 조세체계인 종가세에 부합	①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가 낮음 : 과음으로 인한 폐해 방지에 미흡 ② 제품 고급화에 장애 : 저가품(덤핑제품)이 유리 ③ 가격조작 가능성 ④ 가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 환율과 국제가격에 민감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고급주류에 고수준의 조세 부담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
종량세	①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 높음 : 제품 특성(알코올 도수)에 따른 과세 ② 제품 고급화에 기여 : 고가품 유리 ③ 과세행정이 간편 : 가격조작에 의하여 조세 부담 차이 없음 ④ 가격변동에도 세수 불변 ⑤ 탄력 운용 시 일정 세수확보 가능	① 과세형평의 훼손 : 고가품에 저수준의 과세 ② 조세의 중립성 훼손 : 상대가격의 변화를 초래 ③ 물가상승에 따라 경직 운용 시 실질세수 감소 ④ 수입품에 비차별적

자료: 이준규·송은주 (2017) p192.

4) 이준규·송은주 (2017)

○ 주세 정책의 문제점

- 현행 종가세 하에서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
- 국내 맥주의 경우 출고가(판매비 및 관리비, 이윤 등 포함)에 과세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가(판매비 및 관리비, 이윤 등 미포함)에 과세
- 수입 맥주 소비량 확대에 따라 국내 맥주 산업 위축 우려로 종량세로 전환이 필요.

3. 2019.5 주세개편 발표

❑ 2019.5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과세가 불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발표함.

❑ 개편의 필요성

○ 국산·수입 맥주 간 과세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

○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 산업 육성

-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

○ 주세 종량세 체계에서는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

▪ 종량세: 대부분 선진국(EU,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종량세 체계
▪ 종가세: 한국, 멕시코, 칠레 ▪ 종가세+종량세: 호주, 터키

* 非 OECD 회원국인 중국은 종가세+종량세 체계

5)자료: 기획재정부

❑ 개편안

○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주세 부담액은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를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캔맥주 세 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

○ 수제 맥주 등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덜어 줄 것을 예고하였음

- 출고가가 높아 종가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세 부담 감소,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세 부담 증가
-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는 수제 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막걸리는 ℓ당 41.7원으로 발표. 18년도 현재, 막걸리는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음.

○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한다. 물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2021년

5) 기획재정부 (201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 개편 기본 원칙

○ 정부는 종량세 개편으로 인하여 주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 액을 고려하여 세수 중립적으로 설정함.
- 맥주·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으로 인하여 총 주세 약 300억 원 감소
- 탁주의 경우, 6억 원 감소

○ 과거 한-미, 한-EU 주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름

○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교정 세로서의 주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추진방식

○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맥주·탁주부터 종량세 전환

○ 주류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음주 문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제 2 절 국내 주류시장의 현황

1.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

❑ 다음 <표 7>은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을 나타낸 것임.

<표 7>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탁주	813	782	778	780	768	847	868	873	891	825	800	835	857
약주	164	177	180	190	184	220	230	273	283	288	297	328	355
청주	6	5	6	6	6	7	6	6	7	6	9	12	19
맥주	118	106	99	94	83	73	69	69	61	61	79	88	109
과실주	84	82	131	142	167	204	230	242	250	235	246	259	265
증류식 소주	21	24	27	29	35	43	48	51	54	48	55	64	78
희석식 소주	17	17	17	17	17	17	19	18	18	19	19	20	21
위스키	8	7	8	8	10	12	13	12	11	11	11	10	11
브랜디	5	5	5	5	5	8	8	8	9	8	8	8	8
일반증류주	34	37	42	52	55	70	78	83	92	104	132	164	173
리큐르	96	88	89	89	89	95	99	98	99	97	106	110	112
기타주류	45	65	31	44	74	41	47	59	74	83	89	102	112
주정	10	10	11	11	11	10	10	10	10	10	10	10	9
술덧	1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1,422**	**1,406**	**1,425**	**1,468**	**1,505**	**1,648**	**1,726**	**1,803**	**1,860**	**1,796**	**1,862**	**2,011**	**2,130**

자료:통계청

❑ 제조면허의 증가 원인과 시사점

○ 제조면허의 등록이 꾸준히 늘어 2016년에 2천여 건을 넘어섬.

○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큰 증감은 없는 편이나 기타주류의 면허가 증가함.

- 이는 2016년도 들어 과일 향,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막걸리, 소주의 등장으로 분석됨.
- 기타주류에 해당할 시 기존의 소주, 탁주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타주류의 세율 30%를 적용받게 됨.
- 최근 발포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여 맥주 세율 72%의 적용을 받지 않고 30%의 기타주류 세율을 적용받음

⇒기타주류에 해당할 시 주류의 정체성에 맞는 세율 부과가 이루어져야 함.

○ 과실주 제조면허 또한 10년간 2배를 기록하는 증가세를 보임.

- 이는 20~30대 여성의 선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6)]
- 깊고 풍부한 맛과 건강을 중요시하며 여성이 마시기 좋은 술이라는 평가를 서술하였음.

○ 14년도와 비교하여 약주 23%, 일반증류주 66%, 청주 216%, 증류식 소주 62%로 증가함

- 이는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전통주의 음주 비중과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주류면허는 브랜디, 위스키, 주정 등을 제외하면 증가하였음.

- 이는 주류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주류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음주의 사회비용 확대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함.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주류소비 트렌드 조사

2. 국내 주류의 출고량 현황

❑ 주류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주류의 합계 출고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수입 주류 수요가 늘어 수입분 출고량이 늘었음.

❑ <표 8>는 주류의 출고량 현황과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표 9>를 보면 수입분 주류의 출고량은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0% 증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34%를 기록하였음.

❑ 하지만 국내 주류 출고량은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이며, 2017년도에는 -4%를 기록하였음.

❑ 통계청에 의하면 주류 전체의 출고량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주종 간 주류 출고량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표 8> 주류 출고량 현황

	2010		2011		2012		2013	
수입분	123	▲(8%)	134	▲(9%)	153	▲(14%)	183	▲(20%)
국내분	3,610	▲(2%)	3,696	▲(2%)	3,784	▲(2%)	3,738	▼(-1%)
합계	3,733	▲(3%)	3,830	▲(3%)	3,937	▲(3%)	3,921	▼(0%)

	2014		2015		2016		2017	
수입분	207	▲(13%)	270	▲(30%)	315	▲(17%)	423	▲(34%)
국내분	3,808	▲(2%)	3,804	▼(0%)	3,680	▼(-3%)	3,551	▼(-4%)
합계	4,015	▲(2%)	4,074	▲(1%)	3,995	▼(-2%)	3,974	▼(-1%)

출처: 통계청 [7]

7) 국내분은 주류제조자가 신고한 제조장에서 출고 수량을 의미하며. 수입분은 주류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한 수량을 의미함

3. 국내 주류의 주종별 출고량 현황

❑ 다음의 <표 9>는 국내 주류의 주종별 출고량과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 위스키의 출고량의 내림세가 매우 뚜렷하며, 이는 고급주류이기 때문에 불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 됨.

❑ 제조원가가 높은 전통주류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지역 전통주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표 9> 국내 주요 주류 출고량 현황

	2009		2010		2011		2012	
소주	929	-	931	▲(0%)	923	▼(-1%)	951	▲(3%)
맥주	1,961	-	1,910	▼(-3%)	1,963	▲(3%)	2,031	▲(3%)
탁약주	283	-	431	▲(52%)	477	▲(11%)	465	▼(-3%)
위스키	4	-	3	▼(-25%)	2	▼(-33%)	1	▼(-50%)
기타	345	-	335	▼(-3%)	331	▼(-1%)	336	▲(2%)
국내분	3,522	-	3,610	▲(2%)	3,696	▲(2%)	3,784	▲(2%)

	2013		2014		2015		2016	
소주	906	▼(-5%)	958	▲(6%)	956	▼(0%)	933	▼(-2%)
맥주	2,062	▲(2%)	2,056	▼(0%)	2,041	▼(-1%)	1,978	▼(-3%)
탁약주	441	▼(-5%)	443	▲(0%)	427	▼(-4%)	411	▼(-4%)
위스키	1	⇔(0%)	1	⇔(0%)	0	▼(-100%)	0	⇔(0%)
기타	328	▼(-2%)	350	▲(7%)	380	▲(9%)	357	▼(-6%)
국내분	3,738	▼(-1%)	3,808	▲(2%)	3,804	▼(0%)	3,679	▼(-3%)

자료: 통계청

4. 주류의 수출입 현황

1) 주류 수입 체계

❑ 국산 맥주의 판매가격은 과세표준(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과세표준의 72%인 주세, 주세의 30%인 교육세,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의 10%인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 <표 10> 참조.

❑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며,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산정방식은 국산 맥주와 동일

○ 수입 맥주의 판매관리비와 이윤에는 세금을 책정하지 않으므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의 차이는 상당함.

○ 이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생산비용이 비쌀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됨

- 대량생산능력이 없는 소기업들이나 원재료 투입량이 높은 고품질 국내 수제 맥주에는 생산량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짐.
- 국내 중소 주류생산업체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10> 국산 · 수입 맥주 과세체계

(단위:원, 수입 맥주 신고가 400원 기준)

	국산		수입	
과세표준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	580	수입신고가+ 관세	400
주세	과세표준×72%	417.6	동일	288
교육세	주세×30%	125.3	동일	86.4
부가세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10%	112.3	동일	77.4
합계	1,235.2		851.8+ 이윤	

자료 :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 FTA - 미국・유럽연합(EU)

○ ‘4캔에 1만 원’ 할인 판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수입 맥주 할인 행사가 활발해진 영향은 미국・유럽연합(EU) 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 됨.

○ 관세 철폐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맥주를 수입・유통업체가 급증하면서 맥주 수입량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게 됨.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맥주 수입량은 38만 7891t으로 2015년(17만 919t) 대비 126.9% 증가했음.

○ 소비의 증가세가 뚜렷함. 2012년 3.1%에 불과하던 수입 맥주의 국내 점유율은 2017년에는 10.6%까지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20%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2017년 기점으로 주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서는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이 50%대를 넘어서며 국내 맥주를 앞지름.

<그림 1> 한・EU FTA와 한・미 FTA로 인한 연도별 맥주의 과세 변화 협정 세율

자료 : 통계청(2018)

○ 그동안 국내 맥주 산업은 수입 맥주에 비교하여 불리한 과세 구조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며, 수입 맥주의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국내 맥주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음.

❑ 맥주 수출입 현황

<그림 2> 연도별 맥주 수출입 현황(중량 기준)

(단위 : 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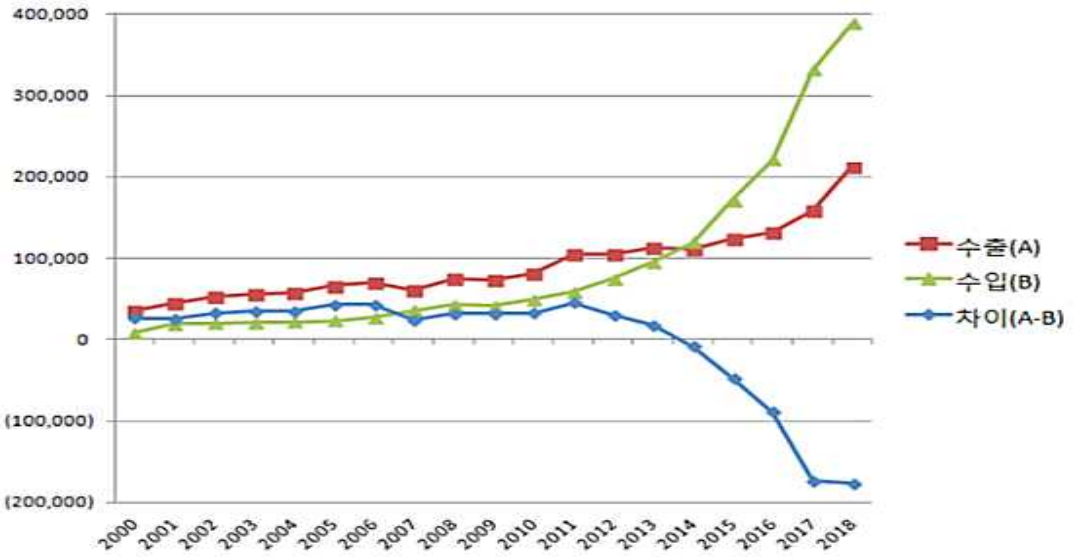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맥주 수출입 현황(금액 기준)

(단위 : USD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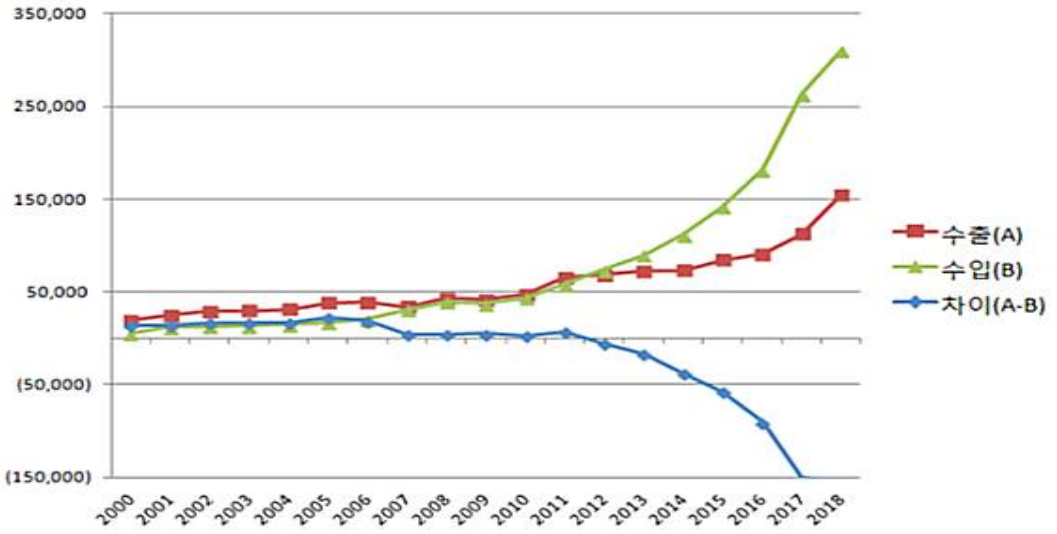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EU・미국산 맥주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수입 맥주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와 반대인 수입 맥주 가격은 여전히 '4캔에 1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과 연동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됨.

○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산 맥주(500mL)의 경우, FTA 발효 이전보다 가격이 더 상승하였음

○ 수입가격은 2011년 상반기 492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43원으로 30.3% 감소했고, 통관가격은 같은 기간 639원에서 356원으로 44.3% 저렴해졌음.

-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3,000원에서 3,073원으로 73원(2.4%) 비싸졌음.
- 관세인하의 효과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수입・유통업체이며, 우리나라 맥주 생산업체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

❑ 한국 주류의 수출현황

○ 한국 맥주의 수출이 2016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 추세에 들어섬. 2018년에는 2017년보다 50% 급증하였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 맥주 수출은 1억 2210만 달러(한화 약 1390억 원)로, 2017년 같은 기간(7820만 달러)보다 56.3% 증가했음을 발표함.

- 이는 한류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가별 맥주 수출액을 보면 중국은 과거 2013년에는 848만 달러였으나 2017년에 69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같은 문화권인 홍콩은 2700만 달러로 2016년과 비교하여 각각 106.2%와 10.1%가 증가함.

<그림 4> 주류별 수출 현황(중량 기준)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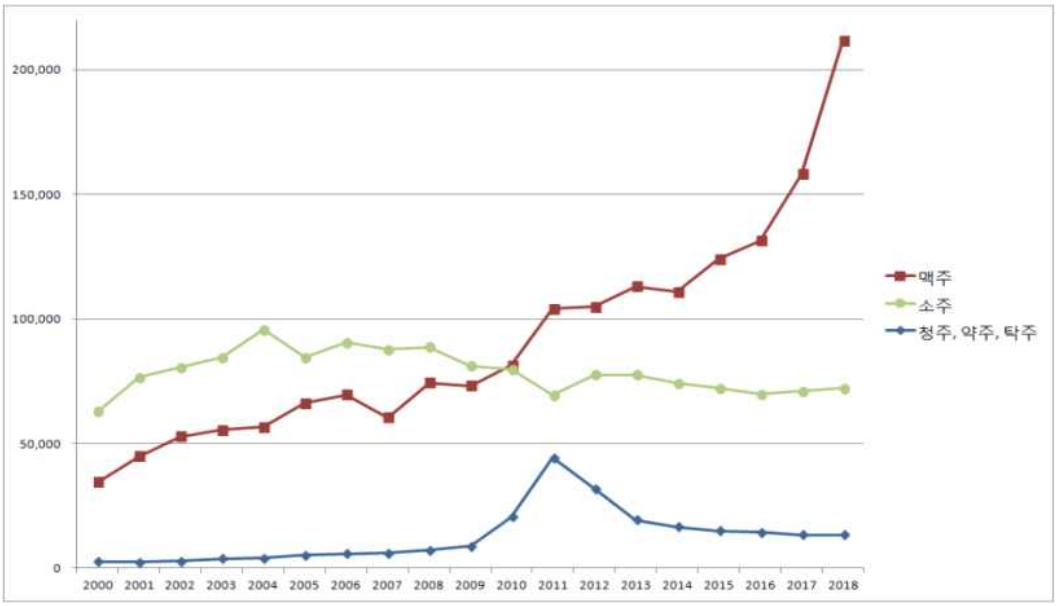

<그림 5> 주류별 수출 현황(금액 기준)

(단위 : USD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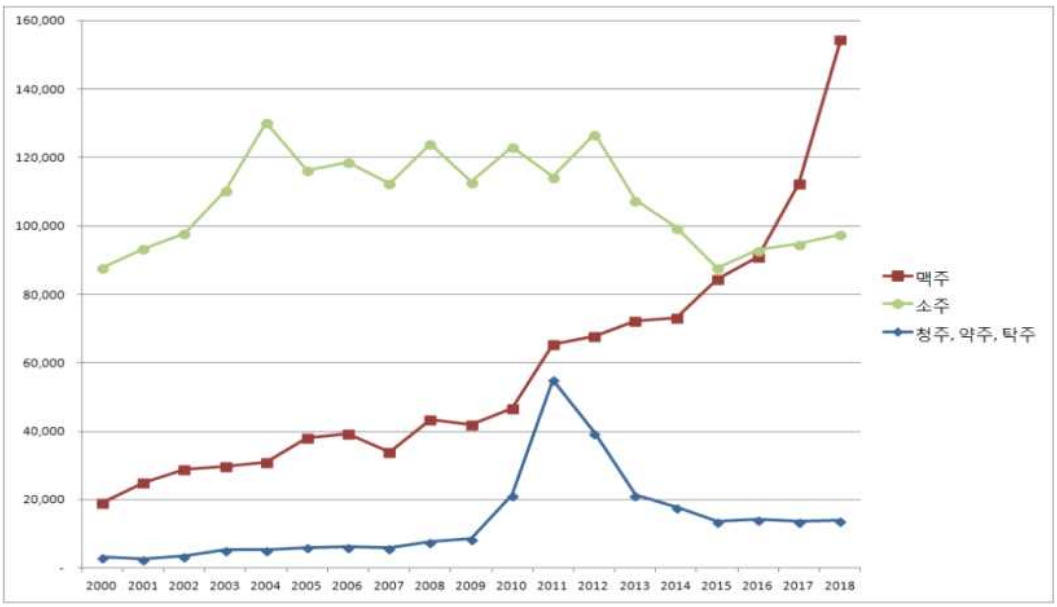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맥주의 수출 증가와 시사점

○ 국내 맥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음.

- 오비맥주는 홍콩 수출 전용 브랜드 '블루걸'을 출시하고 있음. 블루걸은 2017년 기준 홍콩시장점유율 23.57%를 차지하고 있음. 현지 맥주인 칭타오 점유율(10.48%)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최근 한류에 관한 관심이 중화권 주요국 중심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광화문', '백록담' 등 수제 맥주는 높은 품질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네이밍 돼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높음.

○ 우리나라의 맥주 수출이 성장하는 추세로 경쟁력을 갖춰가는 단계임.

- 중장기적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 및 원가 경쟁력 등에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

- 수출국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화권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도록 하여야 함.

❑ 맥주의 수입 증가와 시사점

○ 맥주의 수입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맥주 선호의 다양성과 가격이 평이성으로 분석됨.

○ <그림1> EU와 미국의 FTA 협정 세율은 2018년 0%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맥주 수입량은 2015년 대비 126.9% 증가하였음.

○ <그림2>를 참조하면, 맥주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벌어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종량세 시행 시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리터 당 세금은 같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외 맥주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5. 주류소비 현황

주류소비에 따른 폭음률과 청소년 음주율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 지나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유발

○ 음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이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외부비용을 모든 국민이 분담하게 됨

○ 정영호·성명재(2009)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약 18조에 달한다고 보고함

○ Markowitz(1999)는 음주가 가정폭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주세는 소비억제를 위한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ation)의 성격이 있으며 국민건강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11> 폭음률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전체	39.5	40	39.9	39	38	37.4	37.5	38.7	39.3	39
	19-29세	50.3	50	49.6	51.5	45.9	47.4	48.6	48.5	49.8	50.6
	30-39세	44.9	43.6	46.9	44.7	44.7	43	42.4	44.9	45.6	42.6
	40-49세	43.3	44.3	42.2	38	38.6	38.6	38.7	40.1	41	41.2
	50-59세	35.7	36.7	36.8	37.2	37.6	35.2	33.5	34.2	34.7	34.3
	60-69세	21.1	25.6	20.9	23.5	22.5	22.6	22	25.5	24.4	26
	70세 이상	9	9.3	10.8	8.5	11.8	8.6	12.3	10.9	9.9	10.5
남자	전체	56.7	57.6	57.6	55.9	53.4	53.2	53.1	54.2	53.5	52.7
	19-29세	60.6	62.6	63.3	63.2	55.3	56.2	56.8	58.7	53.5	54.8
	30-39세	63.1	62.2	66.8	65.1	60.5	59.4	60.8	64.1	62.8	57.9
	40-49세	62.7	64.1	61.4	54.6	55.3	59.3	56.2	56.5	58.5	59.1
	50-59세	60.4	58.5	57.5	59	57.9	54.5	52.4	51.3	53	52.5
	60-69세	39.6	45.2	38.1	42	40.2	41.1	39.7	42	42.3	43.3
	70세 이상	20.7	22.3	24.6	19.4	27.4	19	26.4	22.2	23.9	23
여자	전체	22.3	22.2	22.1	22.1	22.9	21.9	22.5	23.3	25	25
	19-29세	39	36.2	35.2	38.9	35.9	37.2	39.5	37	45.7	45.9
	30-39세	25.9	23.9	25.9	23.7	28	26.5	24.2	25.1	27.1	26
	40-49세	23.1	23.8	22.2	21	21.4	18.5	21.8	23.6	23	22.8
	50-59세	10.9	14.7	16.3	15.9	17.9	16.5	15.3	17.3	16.5	16.2
	60-69세	4.8	7.9	5.4	6.6	7.1	6.2	6.1	10	7.4	9.6
	70세 이상	2	1.4	2.2	1.6	1.8	2	2.7	3.4	1	2

자료: 통계청 [월간 폭음률]

❑ <표 11>의 폭음률에 관한 내용의 분석

○ 폭음률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상당하여 30~40대 남성의 음주 실태가 심각함.

○ 여성의 음주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폭음이라 하고, 이는 알코올 약 60g을 함유하는 것으로 계산됨.

- 2017년 기준 남자 52.7%, 여자 25.0%로 남자가 두 배 이상 높음. 남자는 40대가 59.1%로 가장 높고 이후 점차 낮아지기는 하지만 70대 이상도 23.0%로 비교적 높은 편. 여자는 20대가 45.9%로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60대와 70대 이상은 10% 이하로 낮아짐. 한국 여성은 흡연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청소년 음주율 추이

청소년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구 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2015	전체	16.7	7.4	24.9
	남학생	20	8.8	30
	여학생	13.1	5.9	19.4
2016	전체	15	6.5	21.9
	남학생	17.2	7.5	25.3
	여학생	12.5	5.5	18.3
2017	전체	16.1	7.6	23
	남학생	18.2	8.5	26.2
	여학생	13.7	6.7	19.5
2018	전체	16.9	8.5	24.2
	남학생	18.7	9.5	26.6
	여학생	14.9	7.4	21.5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 <표 12>는 청소년 현재 음주율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중1~고3을 대상으로 함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8.7%로 여학생 14.9%보다 높았고, 고등학생(남 26.6%, 여 21.5%)이 중학생(남 9.5%, 여 7.4%)에 비해 높았으며, 남녀학생 모두 최근 2년 증가 경향을 보였음

❑ 주류 소비현황이 주는 시사점

○ 여성의 음주 인구가 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최근 2년간 남녀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였음

- 청소년기의 음주는 알코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어 잘못된 음주습관의 형성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음주 관련 질환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연간 4,809명)임. 하루 기준 13명이 음주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됨.

○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2018트렌드는 혼술로, 혼자 술을 마셔도 좋다는 결과가 1위였음. 이는 허용적인 음주 문화로 술에 대한 인식이 관대한 것으로 판단됨.

○ 알코올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이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

○ 음주는 흡연과 함께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음주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

제 3 절 선행연구

❑ 종량세 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 장봉준(2019)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법을 개정할 경우 맥주 시장의 변화를 세수 중립적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로, 저렴한 맥주를 수입해오는 것이 주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단가가 높은 맥주를 수입해오는 업체의 주세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주장. 그리고 대기업 및 중소규모의 맥주 양조업체는 부담 없이 고품질의 맥주를 양조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맥주 양조업체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진다고 분석함.

○ 이준규,송은주(2017)에 의하면 소주는 수요탄력성이 다른 주종보다 비탄력적이며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소주 산업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소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게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였음.

○ 이와 관련된 추가 논문으로 이준규,송은주(2018)에 의하면 주세 과세제도의 종량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외부불경제 교정 효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소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전환보다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 형태로 하되 5~10년에 걸쳐 종량세 비중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제언.

○ 곽태원(2002)은 알코올음료 소비가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가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이를 분석 후 주세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 주세율은 크게 인상이 필요하며, 현재의 주세율로는 사회적 비용을 거의 충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소주와 위스키를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에는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량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종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음.

○ 정필권(2006)은 주류소비를 감수시키기 위하여 주세율 인상할 경우 주세수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음. 소주의 수요 가격 탄력도는 0.75~0.85 정도이며, 맥주의 가격 탄력도는 1.3~1.6 라고 하였다. 교차 탄력도는 양의 값을 보이며 두 주류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고도주 고과세 정책으로 주류소비를 억제한다면, 소주에 대한 주세를 인상할 때 소주 산업의 수요감소에 대한 충격을 서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소주에 대한 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 모수원, 이광배(2018)는 포도주, 브랜디, 맥주, 위스키 4개 품목의 수입량이 내생적인가를 분석한 결과 맥주 수입량과 위스키 수입량은 강한 외생성을 드러냄. 그리고 환율과 GDP가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GDP 계수가 4개 주류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하락하며,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BCG 분석에서 맥주가 star market에 위치한다는 것과 위스키가 cash cow에서 dog로 이동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세 정책과 외부불경제에 관한 선행연구

○ Kevin D. Shield (2017)에 의하면 주류의 과세와 가격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음. 첫 번째로 세수확보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 청소년의 주류소비 감소와 관련된 피해 감소(외부효과, 내부효과 모두 효력을 가짐)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 효과를 주장하였음.

○ Rachel Griffith (2017)의 논문은 영국의 주류시장의 외부불경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금 설계를 연구하였음. 이 결과 모든 제품에 단일세율을 지정하기보다는 제품 간의 다른 세율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제품의 특성(선호도)에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하였음.

○ 전승훈(2010)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로 담배와 주류의 경우 조세정책이 담배와 주류소비를 감소에 일조하며,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 고가격 정책을 주장하였음.

○ 노병석,서희열(2018)은 사회적 외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주류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100% 이상의 주세율 인상이 필요하며, 복잡하게 세분되어 과세하는 주세율과 이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통합해서 세제를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그리고 소매단계에의 규제 강화 및 주류 소매면허를 의제 면허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으며, 주류 흐름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주세 행정을 전담할 주세전담부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양성범(2012)는 한-EU FTA로 인한 수입 관세 철폐로 각 주류의 소비량 변화로 인해 조세수입은 30 십억 원 증가하나, 음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134 십억 원이나 증가한다고 보고함. 증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추가적인 조세부과가 필요를 주장함. 주류 산업의 순 매출은 증가하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주 산업의 경우 부담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급격한 세율 증가보다는 10～50% 수준의 주세율 추가 부과를 제안하였음.

Ⅲ.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

1. EU

❑ EU의 과세체계

○ Regulation (EC) No 178/2002은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식품안전관리 규정이며, 이 규정은 이후 유럽 내 사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음.

○ EU의 주세

- EU의 주류 소비세는 최저 요율만을 설정하며
- EU 국가들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최소 가격보다 높은 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각국의 전통주류에 한하여 특별법이 존재함.

○ 프랑스의 전통주에 일정 비율에 한하여 간접세를 폐지하도록 함

○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럼주 등에 대하여 소비세 감면을 적용함

○ 이외의 공통조항들은 모든 제품에 적용

<표 13> EU의 최소 주세율

Excise products and minimum rates

Excise product	Rate expressed per:	Minimum rate:
Beer	Hectolitre per degree Plato OR Hectolitre per degree alcohol	EUR 0.748 EUR 1.87
Wine (still and sparkling)	Hectolitre of volume	EUR 0
Intermediate Products (e.g. port, sherry)	Hectolitre of volume	EUR 45
Spirits	Hectolitre of pure alcohol	EUR 550

자료: 유럽연합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8]
2019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적용

○ EU의 한국 주세제도 WTO 제소

- EU와 미국은 위스키와 소주의 제조법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고 세율이 동일하지 않음에 대하여 1997년 WTO에 GATT규정에 따라 제소하였음.
- 제소의 주된 내용은 동질제품이면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차별이 있는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 이전에 유럽의 12개국과 미국 등은 일본, 한국, 칠레 등에 증류주에 대한 동일세율 요구
- 정부는 소주가 위스키와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 아니며 소주 업체의 영세함을 강조하였으나 WTO에서 한국의 패소를 결정 내렸음.
- 이후 한국 정부는 2000년 주세법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음
- 당시 주세율 조정에도 종가세에서 종량세 전환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 (일본과 동일)

8) EU는 최저 세율을 공표할 뿐, EU 가입국 내의 세율은 각기 다름.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excise-duties-alcohol-tobacco-energy/excise-duties-alcohol_en#heading_1

❑ EU 주류 법규·제도

○ 주류의 행정처

- 영국: 국가등록처, 식품기준청 FSA, 환경식품농촌부(포도주)
- 프랑스: 주류안전관리 연구소, 농업식량개발부, 식품농업수산부, 보건체육부
- 독일: 관세청(맥주), 연방전매관리청(증류주), 식량농업부(포도주)

○ 주류 분류

- 영국의 주류 분류는 증류주, 와인, 맥주, 과실주로 분류함.
- 프랑스의 주류 분류는 증류주, 와인류, 맥주류, 기타류로 정의함.
- 독일의 주류는 맥주, 샴페인, 증류주, 포도주로 나누어져 있음.

○ 주류 규제제도

- 유럽의 경우 와인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며 와인을 생산, 유통, 판매할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함. EU의 와인법을 기초로 하되, 각국의 강화된 법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음.
- 영국의 경우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어있으며, 생산 48시간 전에 Wine standards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기록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 프랑스의 경우 INAO를 통하여 포도주의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맥주보리, 호프, 물 이외의 다른 원료의 첨가를 엄격하게 금지함.

❑ FTA

<표 14> EU의 수입관세율

품명	2019.7.1. 이후	2020.6.30까지	최종 관세율 0%
맥주	7.5% 3.8%	0%	2019년
포도주와 포도즙	0%	-	-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6.8% 5.5%	-	2021년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0%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100분의 80 미만),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0%	-	-
예외			
오가피주	9.0% 7.0%	3.6%	2021년
기타	18%	0%	현 세율 유지
브랜드류	9.2% 7.2%	3.6%	2021년
기타	18%	0%	현 세율 유지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표 15> EU의 수출관세율

품목명	기본세율	협정 세율	협정 세율
맥주 병에 담긴 것 등	0%	-	0%
포도주 포도주 등	1.7€/hl ~ 32€/hl	0%	0%
베르무트와 유사한 포도주 실제 알코올 농도 100분의 18 이하인 것 등	0.9€/%vol/hl ~ 10.9€/hl	0%	0%
발효주 피케트 등	5.7€/hl ~ 19.2€/hl	0%	0%
증류주 꼬냑 등	0% ~ 1.0€/%vol/hl+ 6.4€/hl	0%	0%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2. 일본

❑ 일본의 과세체계

○ 일본은 1989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를 변경하였음

- 동일 품목 동일세금 정책의 결과, 종량세로 개편

○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주세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시행 배경: 해외의 대형 맥주 회사가 일반 맥주의 상품개발에 주력하는 것에 반해, 일본의 맥주 회사들은 세금이 낮은 제3맥주의 개발에 주력해 과도한 가격경쟁을 일으켜 시장 축소 우려
- 주세법 재검토를 통해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

○ 발포성 주류, 혼성주류, 양조주류 등의 주세에 대한 기본세율 개정

❑ 일본의 주류 법규·제도

○ 주류 행정

- 일본은 국세청에서 주류 행정을 전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주류 분류

- 맥주의 경우 일본은 발효주로 분류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맥주와 발포주로 세분함
- 포도주의 생산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과실주 종류로 통합하여 분류함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소주와 탁주류로 분류하고 있음
- 특정 명칭 사케는 긴죠주, 쥰마이주, 혼죠조주를 의미하고 각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을 표시하며 특별명칭은 원료,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8종류로 분류함.

<표 16> 일본의 개정 후의 주세 일람

(1kl당 세율)

품목(맥아 비율)		현행	경과 조치 기간		개정 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포성 주류					
맥주	(67% 이상)	220,000엔	200,000엔	181,000엔	155,000엔
발포주	(50% 이상)				
	(25% 이상)	178,125엔	167,125엔	155,000엔	
	(25% 미만)	134,250엔			
제3맥주(제3맥주 등)		80,000엔	108,000엔	134,250엔	
홉 또는 일정 고미료를 원료로 하지 않는 주류 (츄하이)		80,000엔			100,000엔
양조주류					
일본 술		120,000엔	110,000엔	100,000엔	
과실주		80,000엔	90,000엔		
혼성주류(알코올성분 20도) [알코올성분 1도당 가산액]		220,000엔 [11,000엔]	200,000엔 [10,000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규제제도

○ 주류할인 규제

- 매입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총액보다 낮은 금액 판매뿐 아니라 주변 판매사업자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때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판매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이 따름.

❑ 일본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하여 협상 중임.

3. 미국

❑ 미국은 종량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연방 주세와 주로 나뉨

○ 연방 주세율 (Federal Alcohol Tax)는 모든 지역에서 같은 주세로 과세 됨

- 연방 기관에서는 주로 주류의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승인절차를 담당

○ 주 주세율 (State Alcohol Tax)는 주별로 각기 다른 세율로 과세함.

- 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면허발급, 유통, 소비에 관한 행정관리를 담당

○ 주류의 분류

- 미국의 주류 분류는 와인, 증류주, 맥아 음료가 있으며 연방 알코올관리법에 따라 표시됨.

<표 17> 연방 주세율

주종	세 금	용량에 따른 세금
맥주	31갤런/$18	12온스 캔/$0.05
와인 알콜 도수 14% 이하	와인 갤런/ $1.07	750ml 병/ $0.21
14~21%	와인 갤런/$1.57	750ml 병/ $0.31
21~24%	와인 갤런/$3.15	750ml 병/ $0.62
천연발포성와인	와인 갤런/$3.40	750ml 병/ $0.67
탄산와인	와인 갤런/$3.30	750ml 병/ $0.65
발효사과술	와인 갤런/$0.226	750ml 병/ $0.04
증류주	$13.50 와인 등의 함량에 따라 세액공제	750ml 병/$2.14

자료:TTB https://ttb.gov/

<표 18> 2018~2019 주세율 추가사항

주종	세 금	세금
맥주		
연간 2백만 배럴 이하를 생산 소규모 양조장	60,000배럴 이하	$3.50
	60,000배럴 초과	$16
기타맥주	600만 배럴 이하	$ 16.00
	600만 배럴이상	$ 18.00
와인		
알콜 도수 16% 이하	750,000 갤런 이상	$1.07
16~21%	750,000 갤런 이상	$1.57
21~24%	750,000 갤런 이상	$3.15
천연발포성와인	750,000 갤런 이상	$3.40
탄산와인	750,000 갤런 이상	$3.30
발효사과술	750,000 갤런 이상	$0.226
증류주	22,230,000 갤런 이상	$13.50

자료:TTB https://ttb.gov/

❑ 미국의 주류 행정·제도

○ 미국은 주류를 FDA, TTB(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에서 주류 행정을 분담.

- FDA는 시설, 식품의 안전과 표준을 제정함
- TTB는 주류행정법, 연방 주세 부과와 징수, 주류면허 등을 관리

○ 주류 규제제도

- 미국은 연방 기간과 주 정부에서 2중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이중규제시스템의 운용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주류의 불법생산과 운반에 대한 전담기관이 존재 (ATF)
- 연방통상위원회 (FTC)의 설치로 마케팅, 광고 등을 검토하고 규제함

❑ FTA

<표 19> 미국의 수입관세율

품명	2019.7.1.	2020.6.30까지	최종 관세율 0%
맥주	4.2%	0%	2018년
포도주와 포도즙	0%	-	-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0%	3.0%	2021년
기타	6.0%	3.0%	2021년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0%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100분의 80 미만),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0%	-	-
오가피주	8%	4%	2021년
브랜드류	8%	4%	2021년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표 20> 미국의 수출관세율

품목명	기본세율	협정 세율	최종 관세율 0%
맥주 Beer made from malt 등	Free	-	2019
포도주 Sparkling wine 등	4.4¢/liter + 31.4¢/pf.Liter ~ 22.4¢/liter	-	2019
베르무트와 유사한 포도주 Vermouth 등	3.5¢/liter ~ 4.2¢/liter	-	2019
발효주 Cider, whether still or sparkling 등	0.4¢/liter ~ 13.9¢/liter	-	2019
증류주 Pisco and singani 등	Free ~ 23.7¢/pf.liter	-	2019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4. 중국

❑ 중국의 과세체계

○ 식품안전법에 의거 국가식품약품관리총국(CFDA)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하여 모두 관할함.

- 식품의 위생과 주류 위생관리
- 국가 검역, 수입 주류 위생검사, 검사증서를 발급함
- 주류의 안전관리가 세분되고 있음.

○ 주류의 분류

- 중국의 주류는 발효주, 증류주, 발포성 과일주, 혼합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발효주는 발효와인과 와인의 제조에 한함

○ 주류 규제제도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서 규정 중 뷔페, 변질, 은폐, 불순물과 가짜 제품 혼합 등 위조를 목적으로 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표 21> 중국의 주세율

항목	단위 / 세율
알코올 및 주류	세율 20% + 0.5 원 / 500g
백주	(또는 500 ml)
황주	240원 / 톤
맥주	
(1) 甲 맥주	250위안 / 톤
(2) 乙 맥주	220위안 / 톤
기타주류	10%
알코올	5%

자료: 중국 세무국 http://www.chinatax.gov.cn/

❑ FTA

<표 22> 중국의 수입관세율

품명	2017.6.30.까지 2019.7.1. 이후	2020.6.30까지 2019. 7. 1 이후	최종 관세율 0% (해당년)
맥주	25.5%	22.5%	2034년
포도주와 포도즙	10.5%	-	-
그 밖의 포도즙	30%	30%	현 세율 유지
베르무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	10.5%	-	-
그 밖의 발효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	-	-
과실 발효주	12%	-	-
기타	6%	0%	2019년
곡물 발효주	10.5%	-	-
기타	12%	10%	2029년
와인쿨러	10.5%	7.5%	2024년
기타	12%	10%	2029년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100분의 80 미만),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	-	-
포도주나 포두급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0.5%	-	-
위스키류	14.0%	-	-
기타	17.0%	15.0%	2034년
리큐르류와 코디얼	-	-	-
인삼주	20.0%	20.0%	현 세율 유지
오가피주	17.0%	15.0%	2034년
기타	16.0%	13.3%	2029년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표 23> 중국의 수출관세율

품목명	기본세율	협정 세율	최종 관세율 0%
맥주 Beer made from malt	0%	-	2018
포도주 Sparkling wine 등	14%	-	2018
Other	20%	-	2018
Other grape must	30%	-	2018
베르무트와 유사한 포도주 In containers holding 2 L or less 등	65%	-	2018
발효주 Chinese rice wine 등	40%	-	2018
증류주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or grape marc 등	10%	-	2018
Other	10%	-	2018

자료: FTA활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홍콩의 과세체계

○ 홍콩은 주류와 담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청에서 과세함.

○ 홍콩의 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되어 있으며, 주류는 도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함.

○ 알코올 함량이 30% 미만이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30% 이상일 때에 가격의 100%를 부과함

○ 홍콩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류 역시 무관세임.

○ 알코올 30% 이상 100% 부과로 홍콩 내 세율과 같음

<표 24> 홍콩의 주세율

종류		단위	세율
주류(Liquor)	알코올도수 30% 이상	가격(value)	100%
	알코올도수 30% 미만	-	0%
와인	-	-	0%
메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	-	100ℓ	HKD 840
	알코올도수 30% 이상 시 추가로	1% 증가당	HKD 28.1

자료: Custom and Excise Department (HK)

5. 해외사례 시사점

❑ 과세체계

○ **(기타주류 분류)** 일본의 경우 맥주를 3가지(맥주, 발포주, 제3맥주)로 나누어 과세함. 우리나라의 경우 발포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행정제도

○ **(전문 행정기관)** 미국 TTB(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의 경우 주류, 총기, 담배 등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함

○ **(할인 규제)** 맥주 시장의 가격경쟁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은 일본의 경우 주류할인 규제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격경쟁이 과열된 현상을 보여 주류할인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외부경제 확산방지에 힘써야 함.

Ⅳ. 종량세 효과 분석

제 1 절 분석기준

1. 분석방법

❑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종가세 유지 품목과 종량세 개정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분석을 위하여 종가세와 종량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주세체계의 변화가 총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수 중립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2019년 12월에 2018년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7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함.

❑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의 실제 출고량과 주세 납부액을 활용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은 기획재정부 주류과세체계 개편안을 참조하여 분석하였음

2. 정부의 개편 방향

1) 주종별 실질출고량

❑ 주종별 실질출고량과 통계청의 국세통계와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주종별 종량세 전환방안의 계산법을 따르고자 하여 실질출고량을 사용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세액 잠정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물가연동제 [Consumer price index:(CPI)]

❑ 기획재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종량세 전환 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 그에 따른 방안으로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함

❑ 시행 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CPI)]를[9] 기준으로 설정함.

9) 물가가 종합적인 가격수준이라면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수화한 지표임.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CPI 활용하고 있음[10)]

$$L_{0,t} = \frac{\sum(P^t Q^0)}{\sum(P^0 Q^0)} \times 100 = \sum W^0 (P^t / Q^0) \times 100, W^0 \frac{(P^0 Q^0)}{\sum(P^0 Q^0)}$$

L:지수, P:가격, Q:수량, 0:기준시점, t:비교시점, W:가중치

<표 25> OECD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	−0.7	−0.3	−0.1	0.3	2.8	0.8	−0.1	0.5
프랑스	1.5	2.1	2.0	0.9	0.5	0.0	0.2	1.0
이탈리아	1.5	2.8	3.0	1.2	0.2	0.0	−0.1	1.2
캐나다	1.8	2.9	1.5	0.9	1.9	1.1	1.4	1.6
독일	1.1	2.1	2.0	1.5	0.9	0.2	0.5	1.7
스웨덴	1.2	3.0	0.9	0.0	−0.2	0.0	1.0	1.8
한국	2.9	4.0	2.2	1.3	1.3	0.7	1.0	1.9
호주	2.9	3.3	1.8	2.4	2.5	1.5	1.3	1.9
미국	1.6	3.2	2.1	1.5	1.6	0.1	1.3	2.1
영국	2.5	3.8	2.6	2.3	1.5	0.4	1.0	2.6

출처: OECD, 「Prices and Purchasing Power Parities(PPP)」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Consumer and Producer Price Indices」2018. 8

❑ OECD는 가입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음.

10)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과세체계 개편안] 2019

❑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 재정,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하고 있음.

○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하여 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함

○ 조사지역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주요 38개 시(도)를 선정

<표 26> 주류별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가율	2018	전년 대비 증가율	2019. 06	전년 대비 증가율
주류	102.22	107.12	4.79%	107.92	0.75%	110.45	2.34%
소주	106.40	112.37	5.61%	113.35	0.87%	119.46	5.39%
과실주	99.21	95.39	-3.85%	97.29	1.99%	95.00	-2.35%
맥주	100.76	107.02	6.21%	107.45	0.40%	109.30	1.72%
막걸리	101.81	104.73	2.87%	106.32	1.52%	107.11	0.74%
양주	100.01	100.35	0.34%	101.69	1.34%	102.28	0.58%
약주	99.43	99.79	0.36%	100.17	0.38%	100.45	0.28%

자료: 통계청 자료 재가공.

❑ 위의 <표 26>은 통계청의 주류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임.

* 본 논문이 작성되는 2019년 6월은 2018, 2019년 주세와 결정세액을 수집할 수 없기에 <표 27>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산출하였음.

❑ 소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5.61%, 2019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5.39% 증가하였음.

❑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전년도 대비 6.21% 상승하였으며, 2019년 6월 현재 1.72% 상승하였음.

❑ 탁주의 소분류인 막걸리는 2017년 대비 2.87% 상승하였으며, 2018년 전년 대비 1.52%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19년 현재 과실주는 -2.35%로 물가지수가 하락하였음.

○ 과실주는 물가연동 적용 시 주세를 하향된 물가에 반영하지 않고 누적된 출고량을 바탕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주류 전체의 2017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 4.79%, 2018년도 0.75%, 2019년 현재 2.34%로 상승하였음.

제 2 절 종량세 분석

1. 탁주

❑ 탁주 종량세 분석

○ 탁주의 리터 당 주세는 2017년 자료 기준 40.4원/ℓ이지만, 종량세 시행 시 기재부 발표의 41.7원/ℓ를 적용하여 부담해야 할 주세는 최종적으로 41.7원/ℓ임.

<표 27> 탁주의 종량세 적용 시 세율

	출고량 (kl)	주세액 (백만 원)	주세(원/L)	교육세율
탁주	474,055	19,172	40.4	0%

자료: 조세재정연구원(2019)[11]

❑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그림 6> 탁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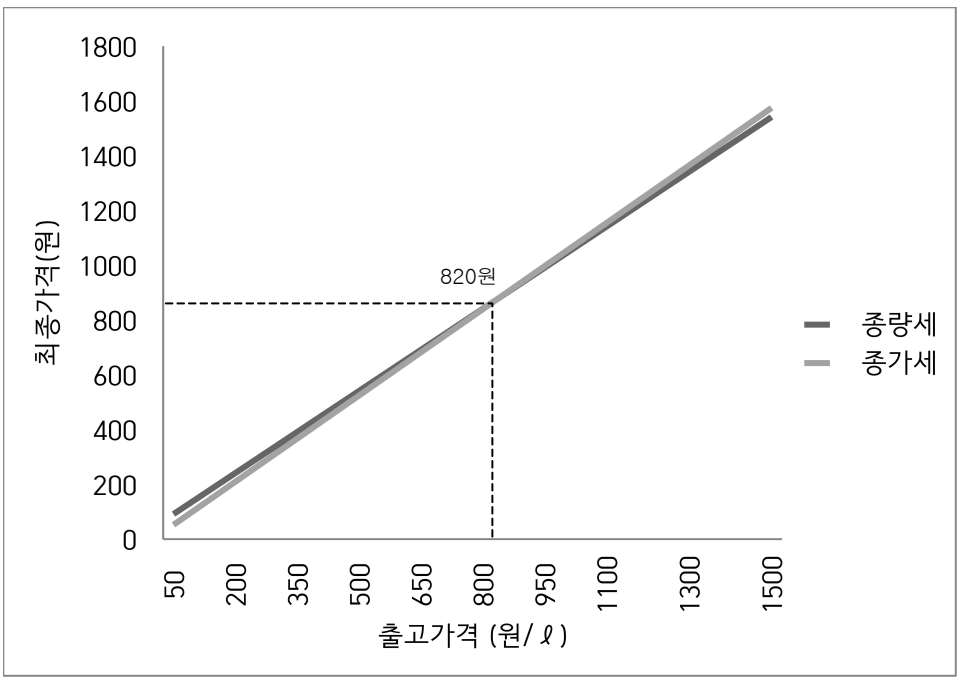

11) 조세재정연구원 (2019),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를 재가공하였음

○ <그림 6>은 탁주의 종가세와 종량세 적용 시, 세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인 교차점을 분석하였음.

○ 종가세와 종량세의 세금이 같아지는 교차점은 820원/ℓ로, 최종가격은 이 가격보다 출고 가격이 비싸지면 종량세 적용 시세 부담이 더 작아짐.

○ 2017년 과세표준을 816원/ℓ과 비교하면, 종량세 전환 시 종량세와 종가세의 세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 820원/ℓ로 4원 차이가 나 탁주 업계에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측됨.

<표 28> 탁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탁주	주세율	2017 과세표준(원/L)	세 부담 교차점 (출고가 원/L)
종가세	5%	816원	820원
종량세	41.7(원/L)		

○ 종량세로 개편 후에도 가격 인상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안정적인 주세 전환이 예상됨.

❑ 탁주의 물가지수 연동

○ 본 논문이 작성되는 2019년 6월에는 2018년과 2019년도 현재의 출고량과 주세 액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산출하였음.

○ 국세 통계상 탁주의 출고량은 2013년 426,216kℓ, 2014년 430,896kℓ, 2015년 415,046kℓ, 2016년 399,667kℓ로 실질출고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출고량의 큰 증감이 없을 것이라 가정한 후 분석을

실행하였음.

○ 탁주의 종량세 하 소비자물가지수는 따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탁주의 소분류인 막걸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52%를 2017년도 주세 현황에 반영한 결과 각각 41.1원/ℓ, 41.4원/ℓ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재부가 산출한 41.7원/ℓ과 0.5원, 0.3원 근소한 차이가 보였음.

○ 2020년 1월 1일 탁주 종량세 시행 시에도 적절한 세율이라 판단됨.

<표 29> 탁주의 종량세 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물가지수 상승률		2018년 주세(원/L)	2018년 교육세(원/L)	2018년 총 세액(원/L)
2018년	1.52%	41.1	0.0	41.1
2019년 6월	0.74%	41.4	0.0	41.4

2. 맥주

❑ 맥주 종량세 분석

○ 본 논문은 2017년도 출고량을 고려하여 맥주의 종량세는 840.6원/ℓ로 나왔으나,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2017~2018년 실질출고량의 평균을 리터 당 830원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음.

* (맥주) '17~'18년 출고량(A): 387.4만㎘, 주세액(B): 3조 2,170억 원, B/A=830.39

<표 30> 맥주의 종량세 적용

	출고량 (㎘)	결정세액 (백만원)	세율(원/L)	교육세율
맥주	1,945,690	1,635,591	840.6	30%

❑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 맥주의 출고 가격 증가에 따라 종량세가 리터 당 830.3원일 경우와 종가세 72%와 비교하였음.

○ 이는 2017년 실질출고량을 바탕으로 2017년 평균 과세표준과 종량세 적용 시 출고 가격에 따라 세수의 증감이 교차 되는 지점을 비교하여 세수의 증감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표 31> 맥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맥주	주세율	2017 리터 당 과세표준	세 부담 교차점 (출고가 원/L)
종가세	72%	1,167.83	1,153원
종량세	830.3(원/L)		

<그림 7> 맥주 종량세 종가세 세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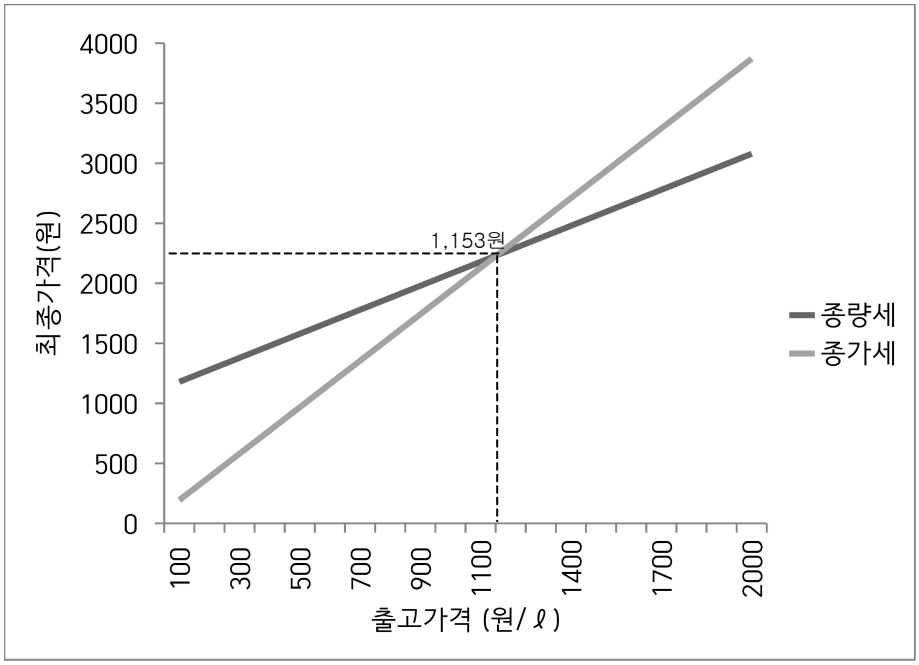

○ 맥주의 출고 가격이 1,153원/ℓ 일 때 맥주의 주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은 2,232원/ℓ가 되며, 종가세와 종량세의 주세 830원, 교육세 249원으로 같아짐. 출고 가격이 1,153원/ℓ를 넘어설 경우, 종가세 적용 방법보다 종량세 적용 방법이 주세 부담이 낮아짐.

○ 국내 맥주의 과세표준이 1,167원/ℓ이므로, 종량세 적용 시 세 부담 교차지점 1,153원/ℓ과 근접하여 주세 부담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1,061원/ℓ이므로, 종가세 하에서는 주세 부과 후 2,054원/ℓ, 종량세 하에서는 2,140원/ℓ로 다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맥주의 물가지수 연동

○ 맥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6.21%, 2018년 0.04%, 2019년 6월 현재 1.72%임. 2017년도 기준으로 종량세를 계산하면 840원임.

○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한 맥주 종량세는 830.3원/ℓ로 2017년과 2018년도 출고량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하락하였음.

○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수입 비중과 출고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세율의 연도별 편차 발생을 요인으로 언급함.

○ 2017년 맥주의 물가상승률은 6.21%로 840원을 연동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의 종량세 830.3원/ℓ 설정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주세를 설정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맥주의 용기별 비교

<표 32> 국내 맥주의 용기별 비교

분 류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캔맥주	500	종가세	823.31	592.78	177.83	159.39	1,753.31
		종량세	823.31	415.15	124.545	136.3005	1,499.31
병맥주	500	종가세	565	406.8	122.04	109.38	1,203.22
		종량세	565	415.15	124.545	110.4695	1,215.16
페트	1.6L	종가세	1,862.08	1,340.69	402.2	360.49	3,965.46
		종량세	1,862.08	1,328.48	398.544	358.9104	3,948.01
생맥주	20L	종가세	15,703.92	11,306.82	3,392.04	3,040.27	33,443.05
		종량세	15,703.92	13284	3985.2	3297.312	36,270.43
수제 맥주	500	종가세	1,295.80	933	279.9	250.9	2,759.80
		종량세	1,295.80	415.15	124.545	183.5495	2,019.04
발포주	500	종가세	668	200.4	20.04	88.84	977.28
	페트 1.6L	종가세	1,496.33	448.89	44.88	199.01	2,189.11

자료:
병, 캔맥주: 오비맥주 카스
발포주: 오비맥주 필굿
수제 맥주: 한국수제맥주협회

○ <표 32>는 맥주의 용기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시행 시 예상 세액을 정리하였음.

○ **(캔맥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시 캔맥주의 가격 254원이 떨어지며, 병맥주는 11.94원 증가함. 페트병의 경우 17.44원 하락하고 생맥주는 20L 기준 2,897원 상승함. 수제 맥주는 740원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오비맥주 카스의 캔맥주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캔맥주 500㎖ 상품 가격은 할인 적용 전 2800~2850원 정도인데, 제조원가와 유통 이윤이 동일하다 가정하면 이 가격은 2500원 전후로 떨어질 수 있어 수입 맥주처럼 국내 캔맥주도 4개들이 1만 원 행사 상품이 가능해질 것임.

○ **(생맥주)** 용기 원가 비중이 작고 술의 양이 많은 생맥주는 ℓ당 830.3원이라는 종량세 방식 개편으로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됨.

-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생맥주에 한해 ℓ당 664.2원으로 20%가량 낮춰 생맥주 생산 비중이 높은 수제 맥주 업체 등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음.
- 분석 결과 수제 맥주 500㎖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가 740.7원 줄어들게 되며, 생맥주의 경우 주세 경감을 받더라도 20ℓ 당 2,827.38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남.
-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음

○ **(발포주)** 발포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의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술로, 일반 맥주보다 주세가 낮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일반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의 72%와 교육세 30%의 세금으로 내지만, 기타주류는 30%와 교육세 10%를 적용받음. 절반 이상 세금이 낮아져 가격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됨.
- 일반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임. 알코올 도수는 4.3~4.5도로 일반 맥주에 비교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출고가는 500㎖ 캔 기준 668원으로 동일 용량 일반 맥주 823원보다 81% 이상 저렴함.

- 수입 발포주의 경우, 버지미스터와 라에스빠뇰라는 알코올도수가 각각 4.8%, 4.5%로 맥아 함량이 70% 이상이어서 맥주와 품질이 비슷함. 하지만 주종이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로 분류됨. 두 맥주 모두 해조류에 많은 알긴산을 1% 정도 함유하고 있음. 국내 주세법은 맥주와 소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가 아닌 것이 1%라도 섞이면 기타주류로 구분함. 맛과 향은 같은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음.

- 국내 맥주 시장이 일본의 장기불황 때를 닮아간다는 분석이 가능함. 발포주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기 때 등장했으며 최근 10년 새 7배가량 성장했음. 같은 기간 맥주 시장은 절반으로 줄어 발포주가 새로운 술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기존 맥주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

<표 33> 수입 주류의 종가세 종량세 비교

분 류		과세표준	총 세금	합계
일본	종가세	1,261	1,424.2	2,685.2
	종량세	1,261	1,313.4	2,574.4
중국	종가세	1,114	1,258.4	2,372.4
	종량세	1,114	1,313.4	2,412.7
벨기에	종가세	800	903.7	1703.7
	종량세	800	1,313.4	2,067.3
네덜란드	종가세	848	955	1,803
	종량세	848	1,313.4	2,120.1
미국	종가세	1,904	1,235.8	3,139.8
	종가세	1,904	1,313.4	3,281.7
독일	종가세	974	1,100.3	2,074.3
	종량세	974	1,313.4	2,258.7
체코	종가세	574	648.4	1,222.4
	종량세	574	1,313.4	1,818.7
아일랜드	종가세	1,294	1,461.7	2,755.7
	종량세	1,294	1,313.4	2,610.7
폴란드	종가세	1,006	1,136.3	2,142.3
	종량세	1,006	1,313.4	2,293.9
홍콩	종가세	841	949.9	1,790.9
	종량세	841	1,313.4	2,112.4
프랑스	종가세	1,235	1,395	2,630
	종가세	1,235	1,313.4	2,545.8
덴마크	종가세	1,042	1,186	2,228
	종량세	1,042	1,313.4	2,333.5
스페인	종가세	961	1,085.5	2,046.5
	종량세	961	1,313.4	2,244.4
오스트리아	종가세	826	933	1,759
	종량세	826	1,313.4	2,095.9
한국	종가세	1,166.5	2,484.2	2484.2
	종량세	1,166.5	1,313.4	2,470.5

자료: 관세청, (2019. 5월)

※총세금=주세+ 교육세+ 부가세

일본, 중국은 관세 30% 22%가 포함되었음.

❑ 주세개편 전후 국산·수입 맥주 가격 변화 예상 분석

○ 국산 맥주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나, 수입 맥주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담이 늘어날 요인이 생긴 것은 맞음.

- 하지만 종가세 적용 시 ℓ당 세 부담이 1,000~1,400원이었던 고가 수입 맥주는 내려가고, 세 부담이 900~1,000원인 저가 수입 맥주는 반대로 세 부담이 올라감.
- 종가세 하의 맥주 가격은 1,000~3,000대로 편차가 컸으나, 종량세 전환 시 1,000원대의 맥주 대부분 2,000원대로 편차가 좁혀질 것으로 분석됨.
- 브랜드 간, 유통업계 간 전 방위적으로 이뤄져 온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가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공고해지면 전 맥주 업계의 전반적인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불공평한 요인으로 과세표준을 꼽았으나,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과세표준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임.

-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은 이윤과 마케팅 비용,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책정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맥주와 과세표준이 비슷함. 일본, 중국의 경우 관세 30%, 22%가 포함된 가격임.
- 일본산 맥주가 국내 편의점 판매량 1위를 2019년 1월까지 기록하고 있었으며, 국내산 맥주보다 과세표준이 높은 수준이었음.
- 이를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산 맥주의 원가 절감과 관련된 대안이 요구됨.
- 본 논문은 종량세로의 전환이 국내, 수입 맥주의 역차별 문제보다 경쟁과열을 중재할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맥주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 맥주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 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수입 맥주를 고가· 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 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 이처럼 종량세 적용에도 고가 맥주의 주세 부담의 경감이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편의점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 이미 이것이 수입 맥주 시장의 표준이 됐고 수입 맥주 회사와 편의점 양쪽에 득이 크기 때문임.

○ 다만 똑같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맥주 중 칭따오(2,900원) 같은 저가 맥주는 수익성이 하락하고 기네스(4,400원) 같은 고가 맥주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

○ 종량세 도입으로 국내의 글로벌 맥주 업체가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유인이 사라져 국내 글로벌 맥주 업체들의 국내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제 3 절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분석

1. 탁주

❑ 개정안

○ 탁주의 세율은 개정 전 종가세 하에서 5%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개정 세율은 41.7원/ℓ로 시행될 예정임.

○ 물가상승과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을 고려하여 설정됨.

○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제품에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 탁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사점

○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탁주는 다른 주종과 달리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세 및 각종 세금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종량세 시행 시 탁주에서 발생하는 주세는 6억 원가량 각각 감소할 것임. 이에 대하여 다음 물가연동 시 세수확보를 위하여 대안이 필요함.

○ 탁주는 제품 간 특성상 수입 주류와 경쟁에서 자유로우며, 다른 주류에 비해 시장질서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품목임.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 인상 없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데 적합함.

○ 막걸리의 경우 양질의 국산 쌀 등 국산 원료사용과 세련된 포장재 사용 등 전통주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2. 맥주

❑ 개정안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종량세 개정 관련 맥주·기타주류 워킹그룹 회의'에 의하면 국내 주요 맥주 제조사, 수제 맥주 업계, 일부 수입 맥주 업체까지 종량세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최근 기재부의 종량세 도입이 발표됨.

○ 맥주 개정 세율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으로 발표하였으며,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 (830.3원/ℓ → 664.2원/ℓ)을 발표하였음.

○ 지난 기획재정부의 주세 개정안을 참조하면, 맥주에 대한 교육세가 주세율 70% 이하일 경우, 주세액의 10%를 부과하며, 주세율이 70% 이상일 경우 30%의 교육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음.

❑ 시사점

○ 현행 주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종량세 액을 설정함으로써 세수 변동 없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그러나 종량세 시행 시 수입원가가 높아져도 리터당 세금은 같은 과세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외 맥주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됨. 원가 상승은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종량세 개편이 진행될 경우 일부 주류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이나 인하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 신고제를 강화고, 주세 행정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필요함.

○ 국내 맥주 제조 대기업은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를 동시에 생산하여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수입 맥주만을 유통하는 중소 업체의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다만, 국내 맥주는 세 부담이 같지만, 수입 맥주는 출고가가 낮은 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수입 맥주를 유통하는 중소 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 이는 국내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될 것. 이에 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함.

Ⅴ. 과세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 종량세 개편 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과세 정책 방향 제안

○ 기재부의 발표에 따라 단계적 전환을 적용하여 제안하였음,

- 모든 주종이 기재부 발표 종량세율 계산식을 따른다고 가정. (맥주·탁주와 동일 방식)

○ 1차 전환의 대상 품목은 맥주와 탁주로 결정된 상태임.

- 탁주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맥주의 경우 용기에 따라 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짐. 캔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세 부담이 상승하여 정부는 2년간 한시적인 세율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안이 필요함.

○ 2차 전환 대상은 발효주(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 주정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약주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적용을 비교한 결과 2017년 과세표준은 4,576원으로, 종량세 적용 시 세부담 교차지점이 4,310원으로 4,310원 초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게 됨.

- 과실주의 경우 맥주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주류로서 지속해서 과실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수입 와인 4900원 행사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스페인, 칠레 등으로 시세 대비 약 60% 저렴한 가격임.

- 과실주의 물가지수 연동 결과 물가지수 하락(-2.35%)을 보였음. 이는 값싼 과실주의 등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하여 주세를 하향된 물가에 반영하지 않고 누적된 출고량과 주세를 바탕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기타주류는 첨가물 여부에 따라 기존의 맥주나 탁주에서 기타주류로 분류되기도 함. 기타주류 속 주종을 재분류하여 발포주의 경우 맥주 세율을 반영, 과일 막걸리는 탁주(막걸리)의 세율을 반영하는 등으로 기타주류 분류를 세분화하여 개편하여야 함.

- 이는 세율이 더 낮은 기타주류의 과세적용으로 혜택을 받아왔으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종량세 전환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주류제조를 위한 원료가 되는 주정 역시 종량세로 전환을 선행함으로써 종량세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기타주류, 주정은 종량세로 과세되며 증류주류는 종가세로 과세하는 혼합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 2차 종량세 전환 제안

주종		비고
종가세	증류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리큐르 등
종량세	발효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
	과실주	-
	기타주류	탁주, 희석식 소주, 리큐르 등 본래의 정체성에 맞게 과세
	주정	-

○ 3차 전환 대상은 증류주 종량세 개편으로 WTO 내국민대우원칙을 고려하여 개편하여야 함.

- 종가세 하에서 증류주로 분류되어 72%의 주세율을 적용하였던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종 간 격차가 큰 것이 현재의 상태임.

- 종량세 적용 시 증류주 주종 간 가격 차이가 좁혀져 우리나라의 소주 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고려하여야 함. 현실적인 제안은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안임.

- 그러나 주요국과의 정합성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종량세를 도입은 필요하므로, 추후 증류주의 세제가 종량세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면, 주세 부담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류주류에 한하여 한시적 세율경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함.

❑ 주류조세 행정기관의 필요성

○ 앞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류 행정을 살펴본 결과, EU 내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이 주류 행정을 따로 분담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FDA, TTB(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로 나뉘어 FDA의 경우 시설과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하며 TTB는 주류행정법과 연방 주세징수, 주류면허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법과 관련된 규정, 면허관리 등이 주세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 주세 행정은 대부분 국세청에 일임되어있음.

○ 이는 주세 관련 행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이긴 하나, 종량세로 개편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주류시장 관리와 주세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함.

- 매년 세율 조정을 물가상승에 의한 일괄적인 조정보다 주류별 실질세율 적용할 전문인력의 필요.

- 종량세 개편이 진행될 경우 일부 주류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이나 인하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가격 신고제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여 규제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도모하여 주류 산업 육성과 관련 정책 개발과 시행.

❑ 국민건강을 위하여 고도수·고세율 원칙을 고수해야 함.

○ 정부의 고도수, 고세율 원칙 제안과 '주세개편이 되더라도 주류의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겠다' 입장은 전 주종으로 확대하여 종량세 시행 시 주류가격 하향이 예상되어 부합되기 어려움.

○ 주류업계의 보호와 국민건강의 중심을 찾기란 매우 어려우며, 주종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는 교정 세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국민건강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종량세 개편은 조세적인 측면과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주류 산업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Ⅵ. 결 론

❑ 본 연구는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과세제도와 주세 행정제도를 비교하고, 종량세로의 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주세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종가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

❑ 국내 맥주 업계가 겪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량세 도입을 결정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종량세 도입은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소주를 제외한 주종에서 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듦.

- ○ 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주류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 그러나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종량세 전환을 하였다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종량세 전환은 주요국과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개편방안임.

-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음
-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효과적인 방안임.

❑ 세수 중립적인 종량세 개편은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종가세 적용 시 가격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구조 때문에 원가절감을 통하여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여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힘든 구조였음.

○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량이 작은 신생 양조장의 유입이 유리해져 국내 고급주류를 육성할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출고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다소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다양한 주류를 선보일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제조원가, 과세표준 등 금액과 관계없이 새로운 설비 도입, 고급 원료사용 등을 통해 고급주류 개발·생산 유도 효과가 있음.

○ 이를 통하여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류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제조원가, 과세표준 등 금액과 관계없이 새로운 설비 도입, 고급 원료사용 등을 통해 고급주류 개발·생산 유도 효과가 있어 한국 주류의 세계화와 새로운 주류 산업 구조가 예상됨

❑ 종량세 개편 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 1차 전환의 대상 품목인 맥주와 탁주에 이어 2차 전환 대상은 발효주(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 주정이 대상이 되어야 함.

- 약주와 청주는 종량세와 종가세 적용을 비교한 결과 큰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 과실주의 물가지수 연동 결과 물가지수 하락(-2.35%)을 보임에 따라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하여 주세를 하향된 물가에 반영하지 않고 누적된 출고량과 주세를 바탕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기타주류는 첨가물 여부에 따라 기존의 맥주나 탁주에서 기타주류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기타주류 속 주종을 재분류·세분화하여 개편하여야 함.

❑ 주세 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

○ 해외 주요국들의 주류 행정을 살펴본 결과, 다수 주류 행정을 따로 분담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 종량세 전환 시 중장기적인 주류시장 관리와 주세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함.

❑ 국민건강을 위하여 교정 세의 취지에 부합해야 함.

○ 종량세 전환은 고도수·고세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건강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한계점

○ 주류의 실질출고량과 주세 현황은 국세청 내부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불가피하게 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본 논문이 사용한 데이터는 2017년 자료로, 좀 더 현재와 근접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주류시장의 현황 차이가 존재함.

○ 주류의 종량세 전환 시 주세 부담의 증감 관하여 조사한 것으로, 실제 소비자의 반응, 출고량 변화와 다를 수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 국내 맥주 업계 육성 방안 및 소규모 맥주 사업자 육성을 통한 국산 맥주 다양화 방안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주세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세제 개편에 있어서 음주의 사회적 비용 해결과 국내 주류 산업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주류별 연도별 수입현황 (2000-2018)
- 주류별 연도별 수출현황 (2000-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주류과세 체계

국세청 http://www.nts.go.kr
- 2009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0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1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2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3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4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5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6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2017년 국세통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유럽연합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
- 주세율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주세 일람

중국 세무국 http://www.chinatax.gov.cn/
- 주세율

통계청 http://kostat.go.kr/

- 연도별 FTA 협정 세율
- 주종별 제조면허 현황
- 주류 출고량 현황
- 국내 주요 주류 출고량 현황
- 월간 폭음률
- 청소년 음주율 추이
- 소비자물가지수

홍콩 관세청 https://www.customs.gov.hk/

- 주세율

OECD Data https://data.oecd.org/

- OECD 청소년 음주율 국제 지표
- OECD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소규모주류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2018.

기획재정부 201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노병석, 서희열, “사회적 외부비용 감소를 위한 주세제도의 정책방향”, 국제경상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1~37, 2010.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주류 시장현황 및 주세법 개정 영향”, 2017 해외 이슈 조사 보고서, 2017.

모수원, 이광배, “수입 주류의 소비행태 분석: 포도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무역통상학회지 제18권 제4호, p.1~16, 2018.

박명호, 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세법연구 07-03, 2007.

박재완, “종가세율을 알코올도수에 비례시키는 절충안을”, 나라경제 8월호, 1999.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2016.

양성범, “시장 변화에 따른 주류 산업의 대응 전략”,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12.

염재화, 송수범, 김병균, “주류산업, 경쟁의 현 주소와 미래 - 소주보다는 맥주의 우려가 크다”, Issue Report, 2018.

이준규, 송은주, “주세체계의 개편방안 -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3호, p.183~216, 2017.

이준규, 송은주,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p.63~87, 2018.

장봉준, “종가세와 종량세가 주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맥주 업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2019.

전병목, 성명재, 김우철,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전승훈,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 특집: 고령화 사회와 국민건강, 2010.

정필권, “주세율의 변화가 주류수요와 주세수입에 미치는 효과 분석”, 현국경제학보 제13권 제2호, 200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주류소비 트렌드 조사”,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연구 - 맥주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18-01, 2018.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소비자 행태조사”, 2017.

홍범교,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Rachel Griffith, Martin O’Connell, Kate Smith, “Design of optimal corrective taxes in the alcohol market”,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7.

Sornpaisarn, Bundit, Kevin D Shield, Esa Österberg, and Jürgen Rehm(ed), “Resource Tool on Alcohol Taxation and Pricing Polic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